

# FTA BRIEF

Vol. 07

September 2024

FTA 상대국 바이어가 요청하는 HS와

한국 수출 HS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결할까?



한국원산지정보원

# 한국원산지정보원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 사진 출처 : 한국무역신문

### 관세청, 2024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 관세청은 우리 기업에 필요한 최신 해외통관정보를 제공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8개 주요 교역국(미국·중국·EU·일본·태국·인도·베트남·인니)에 대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 특히, 태국 품목분류 분쟁 발생, 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활용 방안 등 우리 기업이 빈번히 문의하는 주재국의 최신관세행정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 ☑ 관세관들이 발표한 자료는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 기업들은 앞으로도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료 확인 경로 :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 해외통관정보 → 국가별 통관정보 및 현지동향 → 2024년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발표자료



### 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최신동향 자료 배포

\* 자료 출처 : 관세청\_YES FTA 홈페이지

FTA 일반현황	FTA 활용정보	FTA 활용제도	FTA 기업지원	원산지검증	FTA 자료실	CO-PASS	참여마당
FTA란?	FTA 활용정보	원산지증명서 발급	찾아가는 상담센터	원산지검증	협정별 자료실	CO-PASS 진행정보	FTA 고객상담센터
FTA 체결현황	FTA 발효율	인증수출자 제도	현실형 사업	서류보관 가이드라인	협정별 진행지침	국가별 C/O 발급정보	공지사항
FTA 협정에 보기	FTA 법령/통계정보	협정별 유통관리	YES FTA 전문교육	검증사례	FTA 서식오류	C/O 발급 통계정보	주요원형당면사례
FTA 협정문	FTA 비즈니스 모델	국내제조확인서	공익판매사 제도	주요국 FTA 위험통항	협정별 세율정보	자사 C/O 발급이력	해외통관애로 신고
FTA 용어집	세율정보	원산지확인서	원산지관리담당자 교육	수출물품 주요 검증동향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CO-PASS 장애신고	관련 사이트
RCEP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사전심사	홍보 영상		FTA 상대국 통관정보		
APTA	HS 연계표		참고자료		e-Book		

- ☑ 관세청은 FTA 활용도 향상과 국내 수출입기업의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자료를 공개하였다.
- ☑ 동향 자료에는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를 중심으로
  - (1) 유형별 위반사례 (2) 주요 검증요청 품목 (3) 수출 시 유의사항 (4) 검증 통계 등이 담겼다.
- ☑ 해당 내용은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FTA 상대국 바이어가 요청하는 HS와 한국 수출 HS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결할까?

- 품목분류는 원산지결정기준, 양허세율, 양허대상품목 등을 결정하는 FTA 활용의 핵심요소임
- 품목분류는 '하나의 상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소호에 분류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함
- 그러나 국가 간 문화·기술수준 등의 차이로 품목분류 해석이 달라져 품목분류 상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FTA 활용에도 영향을 미침
- 이에 국가 간 품목분류 상이 사례를 살펴보고, 품목분류 문제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업무 지침을 소개하여 우리 기업들의 FTA 관련 애로 해소를 돕고자 함



[ 글\_이나현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

## 1. 개요



현재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건의 FTA가 체결되었고, 한-필리핀 FTA, 한-에콰도르 SECA<sup>1)</sup>, 한-UAE CEPA, 한-GCC<sup>2)</sup> FTA의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FTA를 체결하는 것이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협정에서 양허대상 품목으로 양국간 개방 여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HS CODE(품목번호)이다.

HS CODE는 국제적으로 HS 협약에 근거하여 일의성 분류원칙에 따라 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 간 문화나 기술수준의 차이 등으로 동일한 품목에도 품목분류 해석 차이로 품목분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잘 알려진 스마트 위치를 사례로 생각해 보자. 스마트 위치는 음성통화, 문자·이메일 수신 알람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한국, 일본, 미국 등은 스마트 위치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반면 인도, 태국, 튀르키예 등은 시계로 분류하여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하였다.

무선통신기기는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관세를 적용받지만, 시계로 분류되면 인도, 태국, 튀르키예 등에서는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스마트 위치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동 위원회는 스마트 위치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품목분류 상이 사례는 HS CODE에 따라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등이 상이해지고, 협정상대국과의 서로 다른 HS CODE를 적용함으로써 통관절차 지연과 같은 애로사항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 간 품목분류 상이 사례를 살펴보고, 품목분류 상이로 FTA 관련 문제 발생 시 기업들이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는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소개하고자 한다.

1) SECA : 전략적경제협력협정 2) GCC(걸프협력회의)(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 2. 품목분류 상이사례 살펴보기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 간 품목분류 상이 사례를 살펴보고, HS CODE 상이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협정세율, 원산지 판정 결과를 비교해 보자

### 사례 1 휴대폰 케이스

#### • 한국 수출신고필증 vs 태국 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첫 번째는 우리나라와 태국 간 품목분류 상이 사례이다. 본 물품은 뒷면은 플라스틱제 앞면은 폴리우레탄으로 구성된 휴대폰 케이스로써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상품명 : 휴대폰 케이스
- 모델명 : EF-FI950BOEGWW
- 물품설명 : 휴대폰의 스크래치를 방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케이스.  
뒷면(케이스)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며 앞면(플립)은 폴리우레탄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 휴대폰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음.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4202.32	3926.90
호의 용어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젝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가죽·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병 케이스·신변장·식품용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소호의 용어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기타
해석상이 기준	휴대폰 케이스를 플라스틱 용기로 분류한 바 있음 (국내사례)	용기가 아닌 플라스틱 기타제품으로 분류

◎ 자료 출처 : 관세청「제3편 HS 품목분류 상이사례 수집·분석」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우리나라는 동 물품을 용기와 유사한 형태로 보아 제4202호의 플라스틱 재료의 용기로 분류한 바(품목분류 유사사례)가 있다.

반면 태국에서는 동 물품을 플라스틱 용기로 보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제3926호로 분류하였다.

### ▶ 협정세율·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 판정 예시 비교

RCEP 협정을 기준으로 ‘휴대폰 케이스’의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협정세율·원산지 결정기준·원산지 판정 결과를 비교해 보면,

### ● (RCEP) 협정세율·PSR·원산지 판정 예시 비교

(기준년도 : 2024년 기준)

적용협정	품목번호	한국수입		태국수입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판정
		기본	협정	기본	협정		
RCEP	제4202.32호 (한국측 분류)	8%	5.6%	20%	24%	CC or RVC40%	충족
	제3926.90호 (태국측 분류)	8%	4.6%	10%	7%	CTH or RVC40%	충족

① **협정세율** 핸드폰케이스가 제4202.32호로 분류된다면 협정세율은 한국 5.6%, 태국 24%이며, 제3926.90호로 분류된다면 한국 4.6%, 태국 7%이다.

② **원산지결정기준** 휴대폰 케이스는 HS CODE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중 세번변경 기준의 엄격도가 상이해지는데, 제4202.32호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3926.90호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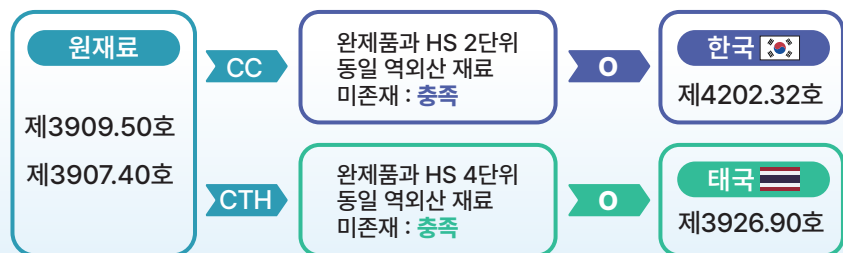
③ **원산지판정** RCEP 협정의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해 보면, 제4202.32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C로 완제품과 비원산지 재료의 HS 2단위가 모두 상이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제3926.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로 완제품과 비원산지 재료의 HS 4단위가 상이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 ● ‘휴대폰 케이스’의 원재료 명세서(BOM)

원재료 품명	품목번호	원산지
폴리우레탄(Polyurethanes)	3909.50	역외산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s)	3907.40	역외산

### ● 원산지판정 예시 결과표



주1) 원재료, HS CODE 및 원산지는 저자 작성으로 참고용임  
 주2) 원산지 판정시 최소허용기준과 중간재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이와 같이 휴대폰 케이스의 HS CODE에 따라 RCEP 협정의 원산지 판정을 해 본 결과, 두 상이세번 모두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품목분류의 상이 여부가 원산지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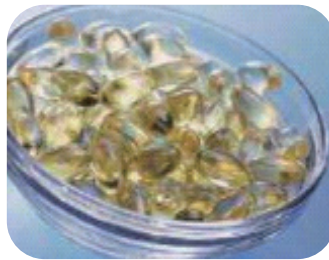
## 2. 품목분류 상이사례 살펴보기



### 사례 2 어유

#### • 한국 수출신고필증 vs 태국 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두 번째는 '어유'의 한국과 태국 간 품목분류 상이 사례이다. 동 물품은 DHA 70%, EPA 10%, 각종 비타민 및 무기질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조식품이다.



- 상품명 : 어유
- 모델명 : 오메가 3 오일
- 물품설명 : 오메가 3오일은 고순도 오메가 3지방산의 건강기능보조식품으로서 EPA 및 DHA를 다량 함유한 제품. 회사에서는 Dietary nutritional supplements로 소개함. 상세성분은 10%의 EPA와 70%의 DHA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남. DHA란 주로 등푸른생선에 많이 함유된 탄소 수 22개, 이중 결합 6개의 ω(오메가)-3계열의 고도불포화지방산임. 67)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EPA 또는 DHA)는 비정상적인 혈액 응고 작용을 방해하여 혈액의 흐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2106.90	1504.20
호의 용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소호의 용어	기타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간유(肝油)는 제외한다]
해석상이기준	어유 외 비타민, 무기질 등이 함유된 조제 식료품으로 검토	순수한 어유로 검토

© 자료 출처 : 관세청「제3편 HS 품목분류 상이사례 수집·분석」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우리나라는 동 물품을 DHA 70% 외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기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조제식품으로 보아 제2106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다.<sup>3)</sup>

참고로 관세율표 제2106호 해설에서는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를 예시 하면서 “보통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무기물·아미노산·농축물·추출물·분리물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태국은 동 물품을 ‘순수한 어유’로 보아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이 분류 되는 제1504호로 분류하였다.

### ▶ 협정세율·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 판정 예시 비교

RCEP 협정을 예로 들어 ‘어유’의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판정 결과를 비교해 보면,

#### ● (RCEP) 협정세율·PSR·원산지 판정 예시 비교

(기준년도 : 2024년 기준)

적용협정	품목번호	한국수입		태국수입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판정
		기본	협정	기본	협정		
RCEP	제2106.90호 (한국측 분류)	8%	6.4%	5%	3.5%	CTH or RVC40%	충족
	제1504.20호 (태국측 분류)	3%	0%	10%or 0.3 baht/ Kilogram	0%	CC	불충족

① **협정세율** 어유가 제2106.90호로 분류되면, 한국과 태국의 협정세율은 각각 6.4%, 3.5%이다. 그러나 제1504.20호로 분류된다면 두 국가 모두 0%의 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② **원산지결정기준** 제2106.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 또는 RVC 40%로 둘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되더라도 원산지로 인정된다. 반면 제1504.20호는 단일기준(CC)이 적용되어 제2106.90호에 비해 원산지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③ **원산지판정** RCEP 협정의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해 보면, 제2106.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로 완제품과 HS 4단위가 모두 상이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반면 완제품이 제1504.20호로 분류되면, 완제품과 HS 2단위가 동일한 비원산지 재료 FISH OIL(제1504.20호)이 존재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3) 다만,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제1517호로 분류될 수 있다.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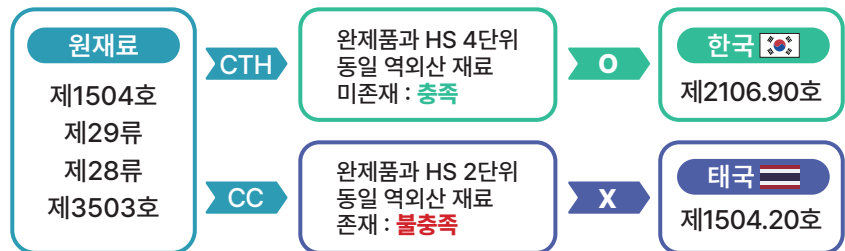
17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유채유·땅콩기름·들기름·참기름은 제외한다)	<p>가.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517호에 분류한다.</p> <p>나. 비타민 E를 첨가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517호에 분류한다.</p> <p><b>비고</b></p> <p>1) 가목 및 나목에서 비타민 E의 중량은 <math>\alpha</math>-토코페롤, <math>\beta</math>-토코페롤, <math>\gamma</math>-토코페롤 및 <math>\delta</math>-토코페롤의 중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p> <p>2)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캡슐에 충전한 물품의 중량은 전 중량에서 캡슐의 중량을 제외한 순중량을 말한다.</p>
----	---	--



● '어유'의 원재료 명세서(BOM) 및 원산지판정 결과표

원재료 품명		품목번호	원산지
FISH OIL(DHA함유)	-	1504.20	역외산
FISH OIL(EPA함유)	-	1504.20	역외산
비타민 (제29류)	비타민 A	2936.21	역외산
	비타민 D	2936.29	
	비타민 K	2936.29	
미네랄 (제28류)	인	2804.70	역외산
	칼슘	2805.12	
	요오드	2801.20	
	셀레늄	2804.90	
연질캡슐	-	3503.00	역외산

● 원산지판정 예시 결과표



주1) 원재료, 품목번호 및 원산지는 저자 작성으로 참고용임  
 주2) 원산지 판정 시 최소허용기준과 중간재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 수출자가 한국의 검토회번인 제2106.90호로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태국의 수입자는 제1504.20호에 비해 3.5%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태국의 검토회번인 제1504.20호의 경우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원산지결정 기준을 불충족하여 협정관세적용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수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2106.90호로 어유를 수입할 경우 협정세율은 6.4%로 제1504.20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으로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1504.20호로 수입할 경우 협정세율은 0%이나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으로 협정관세적용을 받을 수 없다.

\* 단, 실무적으로는 품목분류의 국가간 해석차에 따라 한국 수입시는 제2106.90호, 태국 수입시는 제1504.20호로 분류해야하므로 아래 표의 음영의 사례로 적용된다

구분	한국 수입시	태국 수입시
한국측 분류 (제2106.90호)	세율실익 : 1.6% PSR : 충족	세율실익 : 1.5% PSR : 충족
태국측 분류 (제1504.20호)	세율실익 : 3% PSR : 불충족	세율실익 : 10% PSR : 불충족

☞ 한국측 분류는 세율실익은 태국측 보다 다소 적지만 PSR을 충족하여 FTA 활용가능  
 ☞ 태국측 분류는 세율실익은 크지만 PSR 엄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FTA 활용가능

### 3.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 처리 지침<sup>4)</sup> 알아보기



앞서 품목분류 상이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FTA 협정국 간 품목분류 상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과 협정세율의 차이가 발생하여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다

#### 수출기업 활용 ▶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와 상대국에서 요청하는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 등 협정상대국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면 협정상대국에서 요청하는 HS CODE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 ● 협정상대국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

✓ 수입신고필증
✓ 품목번호 확인서
✓ 사전심사결정서
✓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협정상대국의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 CODE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상대국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협정상대국에서 수출국 HS CODE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면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협정상대국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어도 가능**

4)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의 전체 내용은 <https://www.customs.go.kr> > 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음

**수입기업 활용**

협정상대국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와 수입신고서의 HS CODE가 상이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

➤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가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가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예:한-EU FTA 등)는 HS CODE가 원산지증명 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 HS CODE가 필수항목이 아닌 원산지증명서 예시(한-EU FTA)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sup>(1)</sup>)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sup>(2)</sup>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sup>(1)</sup>)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sup>(2)</sup> preferential origin.



➤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가 필수항목인 경우 (예 : 한-아세안 FTA 등)

C/O상 HS CODE의 PSR과 수입신고서상 HS CODE의 PSR의 충족여부 해석시 C/O상 HS CODE의 PSR이 수입신고서상 HS CODE의 PSR을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안 별로 판단하여 협정(특혜)관세 적용 등 처리할 수 있다.

-----● HS CODE가 필수항목인 원산지증명서 예시(한-아세안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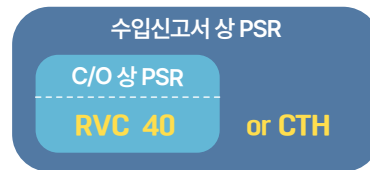
1. 송하인(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		참조 번호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간 자유무역지대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병용) 서식 AK 발행국 _____ (국가) 뒷면 참조			
2. 수하인(수입자의 상호, 주소, 국가)					
3. 운송수단 및 경로 (아는 범위까지 기재)  출항일  선명/편명  적출항		4. 담당자란  <input type="checkbox"/>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지대 특혜관세에 의한 특혜대우  <input type="checkbox"/> 특혜대우 비부여 (사유 기재 요)  ..... 수입국의 권한있는 서명자의 서명			
5. 연번	6. 포장의 표시 및 번호	7. 포장의 수량 및 종류, 품명(적절한 경우 수량 기재 및 수입국의HS 번호 포함)	8. 원산지 기준 (뒷면 참조)	9.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및 가격(FOB)	10. 송장번호 및 일자
11. 수출자 신고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이며 모든 물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 (국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지대 특혜관세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고 다음 국가로 수출되었음을 신고합니다.  ..... (수입국)  ..... 장소, 일자, 서명권자의 서명		12. 증명  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증명함.    ..... 장소, 날짜, 서명 및 증명기관의 관인			
13. <input type="checkbox"/> 제 3 국 송장 <input type="checkbox"/> 전 시 <input type="checkbox"/> 연결 원산지 증명서					

- ④ 원산지증명서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이미 충족하는 경우 : **협정(특혜)관세 적용**

예를 들어 C/O 상 HS CODE의 PSR이 RVC 40%이고, 수입신고서 HS CODE의 PSR이 CTH 또는 RVC40%인 경우, 역내부가가치가 RVC 40%로 동일하여 원산지 제품에 해당하므로 수입신고서상 HS CODE로 협정(특혜)관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

----- ●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판 단 근 거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가치발생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역내가치발생기준 35%	역내가치기준 35%를 초과하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역내가치발생기준 40%	<b>선택기준</b>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또는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제품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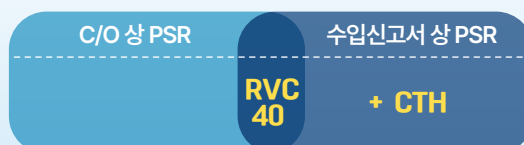


- ④ 원산지증명서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특혜)관세 적용**

간단한 예시로 C/O상 HS CODE의 PSR이 RVC 40%이고, 수입신고서상 HS CODE의 PSR이 조합기준(CTH+RVC40%)인 경우,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특혜)관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

----- ●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판 단 근 거
역내가치발생기준 40%	<b>조합기준</b>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및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확인 불가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확인 불가
역내가치발생기준 30%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수입국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세번변경기준	완전생산기준	



#### 4. 맺음말



FTA 활용에 있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원산지결정기준, 협정세율, 양허대상 품목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다. 이에 따라 수출입기업이 FT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체계와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가 수행되고 있지만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도 국가간 문화차이·기술차이·복합기능의 신제품 개발 등에 따라 각국의 분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품목분류 상이사례가 국제무역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고 FTA 활용에 있어 관세 실익의 차이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수출입 기업 들은 항상 품목분류 상이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국가 간 품목분류 문제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품목분류 사전심사<sup>5)</sup> 제도 등을 활용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를 부여받고, 동시에 협정상대국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 등을 확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관리 및 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끝으로 품목분류 상이 문제 발생시 본고에서 소개한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이 잘 활용되어 수출입기업의 FTA 및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5)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임

# FTA BRIEF

Vol. 07 | September 2024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SSN 3022-7984